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- 1945호

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고시(안) 행정예고

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'먹이주기 금지구역'을 지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24일

노원구청장 

1. 행정예고 내용

□ 지정 관련 근거

가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

나.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

□ 지정 목적

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,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·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

□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

□ 금지기간

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공고일 ~ 별도 해제 시까지

2. 금지구역 지정 대상지 목록

연 번	구 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고
1	도로 및 기타 (민원발생 등)	계 상 초 등 학 교	상계동 159-13	574㎡	
2		상 계 대 림 아 파 트 일 대	상계동 172-6	3,623㎡	
			상계동 172-7	126㎡	
3		풍 년 상 회 일 대	상계동 457-1	368㎡	
			상계동 456-120	783㎡	
4		공 릉 중 · 태 릉 초 일 대	공릉동 91-3	4,201㎡	
			공릉동 87-2	3,983㎡	
			공릉동 81-3	4,276㎡	
			공릉동 87-4	1,691㎡	
5		비 선 아 파 트 후 문 일 대	공릉동 111-2	6,607㎡	신규
6		샘 물 약 국 일 대	공릉동 119	21,067㎡	신규

3. 지정 위치 및 범위

연번	명칭	위치
1	계상초등학교	상계동 159-13
범위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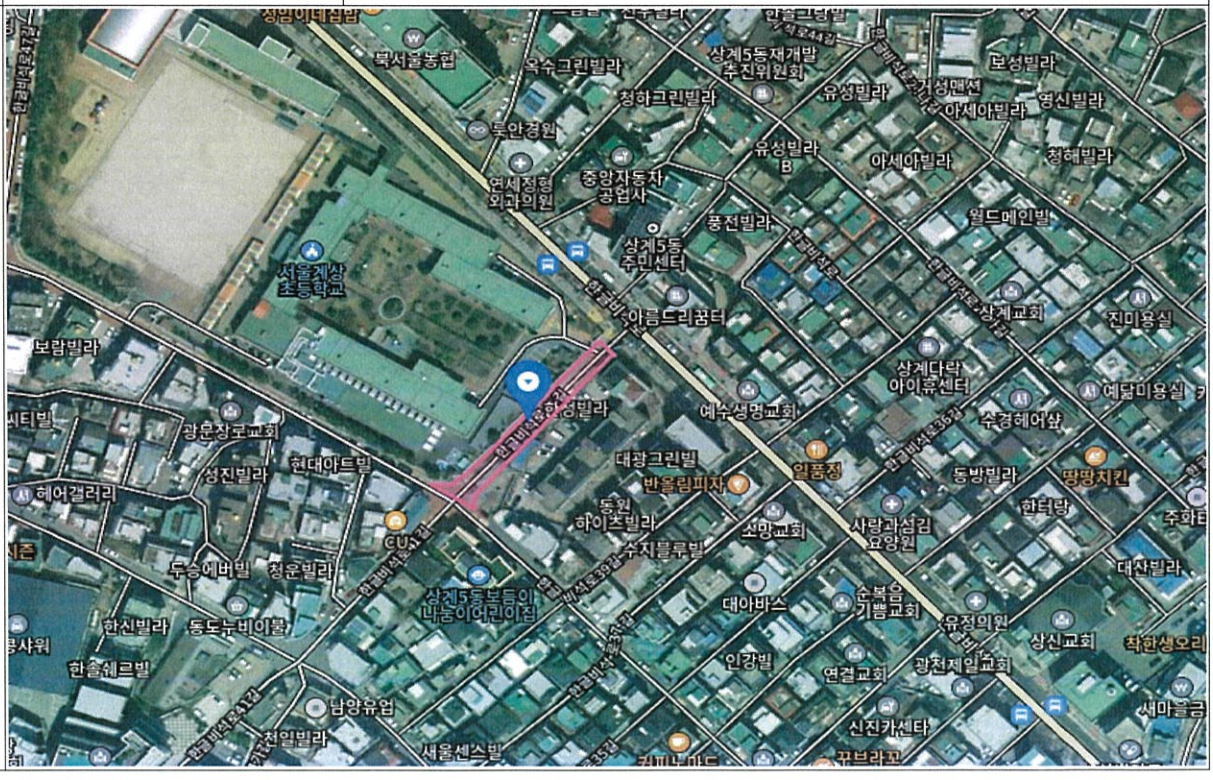	

연번	명칭	위치
2	상계대림아파트 일대	상계동 172-6
범위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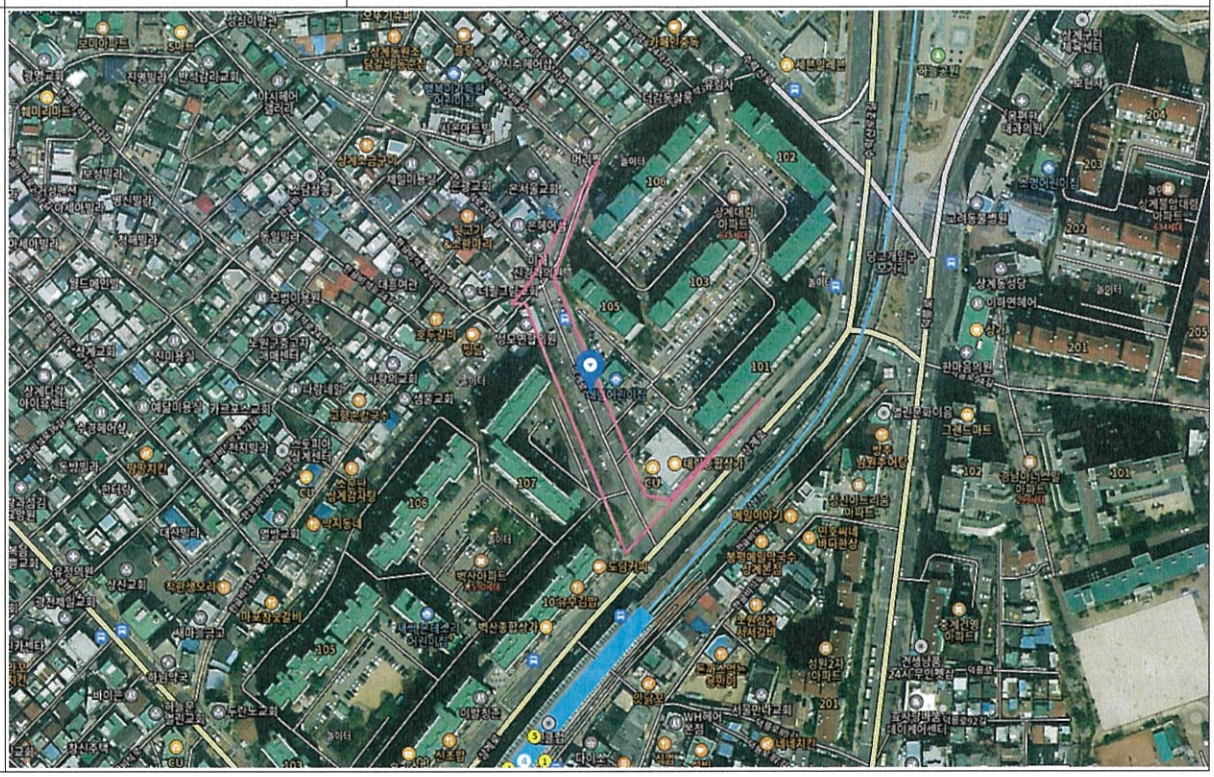	

연번	명칭	위치
2	상계대림아파트 일대	상계동 172-7
범위		

연번	명칭	위치
3	풍년상회 일대	상계동 457-1
범위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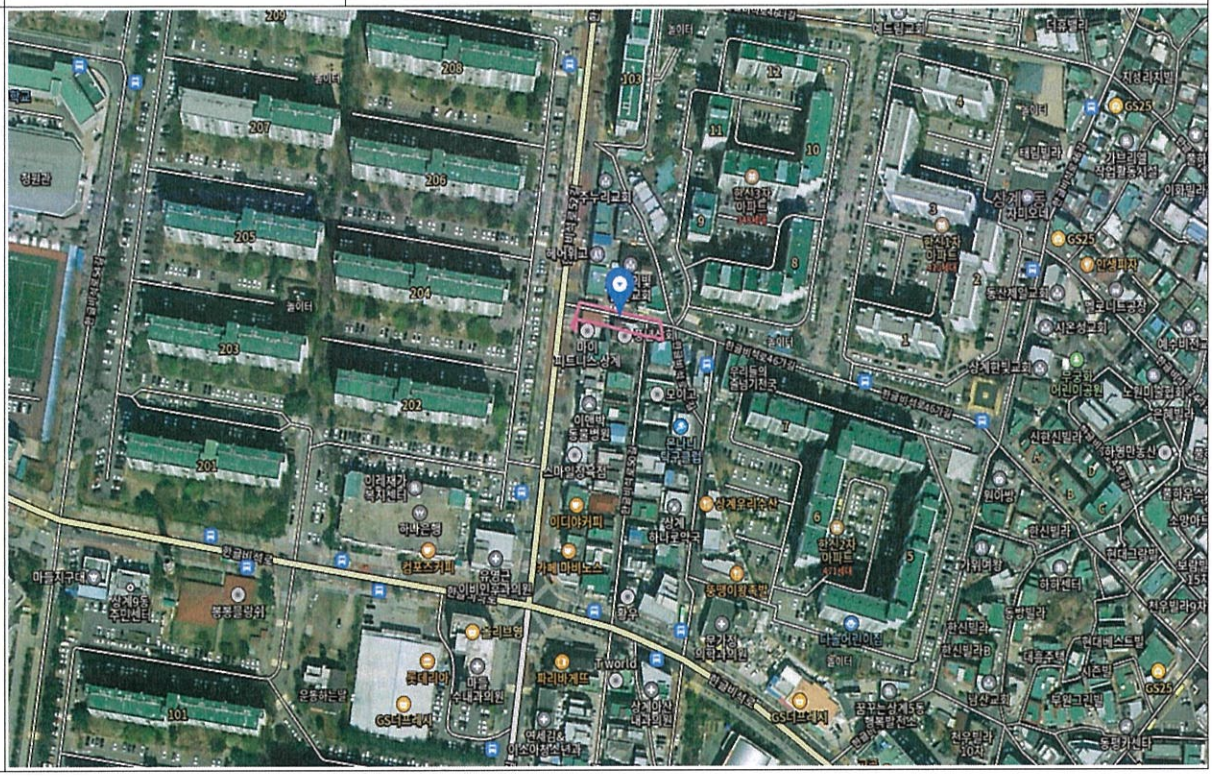	

연번	명칭	위치
3	풍년상회 일대	상계동 456-120
범위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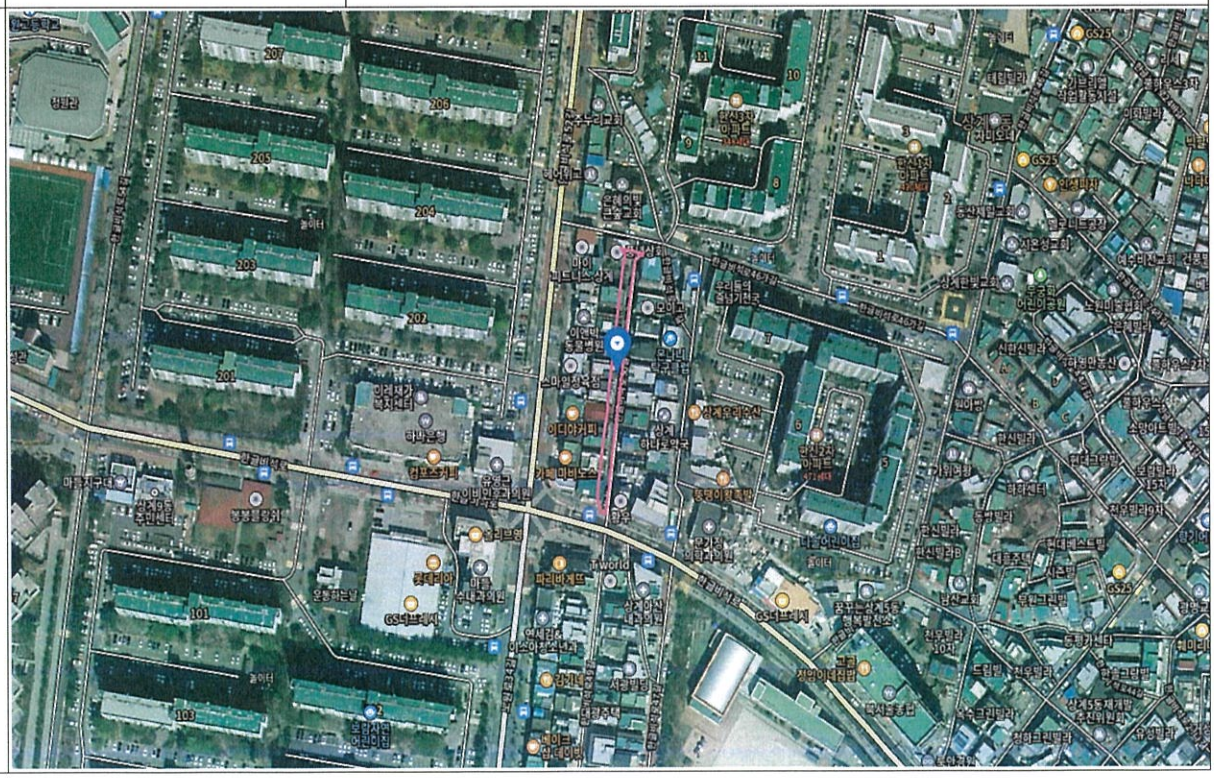	

연번	명칭	위치
4	공릉중·태릉초 일대	공릉동 91-3
범위		

연번	명칭	위치
4	공릉중·태릉초 일대	공릉동 87-2
범위		

연번	명칭	위치
4	공릉중·태릉초 일대	공릉동 81-3
범위		

연번	명칭	위치
4	공릉중·태릉초 일대	공릉동 87-4
범위		

연번	명칭	위치
5	비선아파트 후문 일대	공릉동 111-2
범위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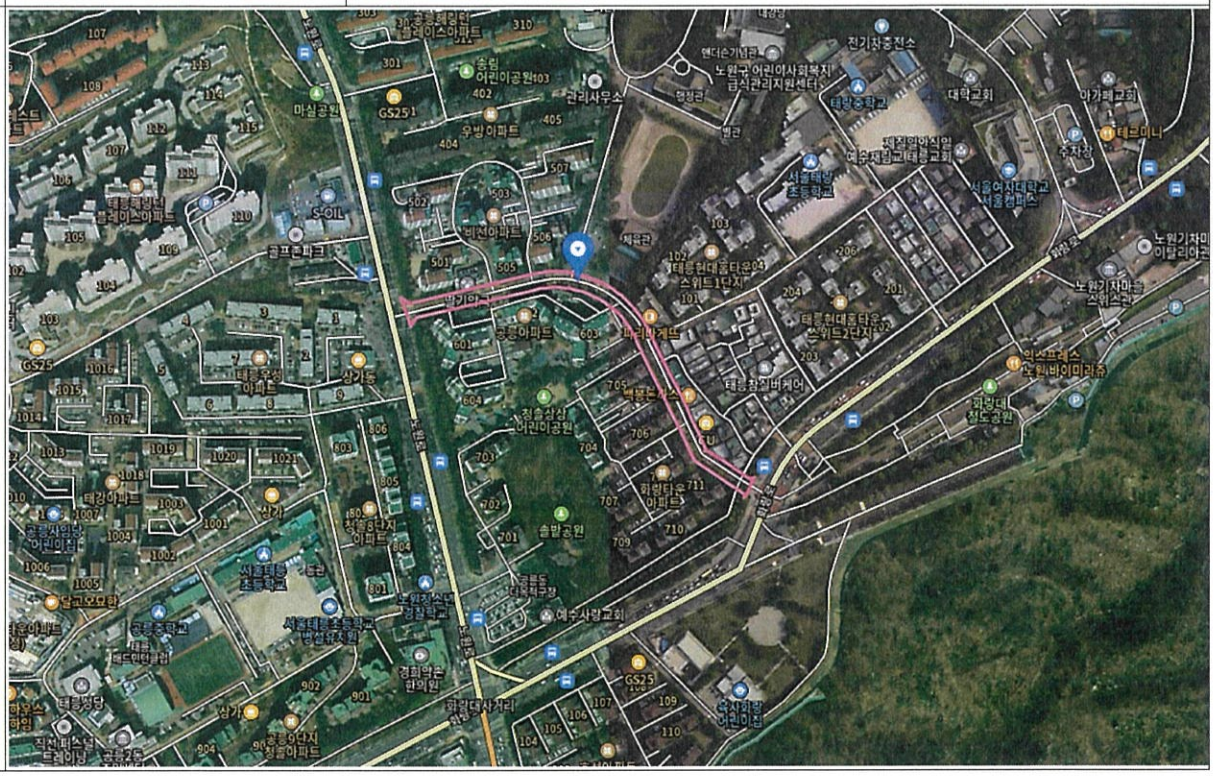	

연번	명칭	위치
6	샘물약국 일대	공릉동 119
범위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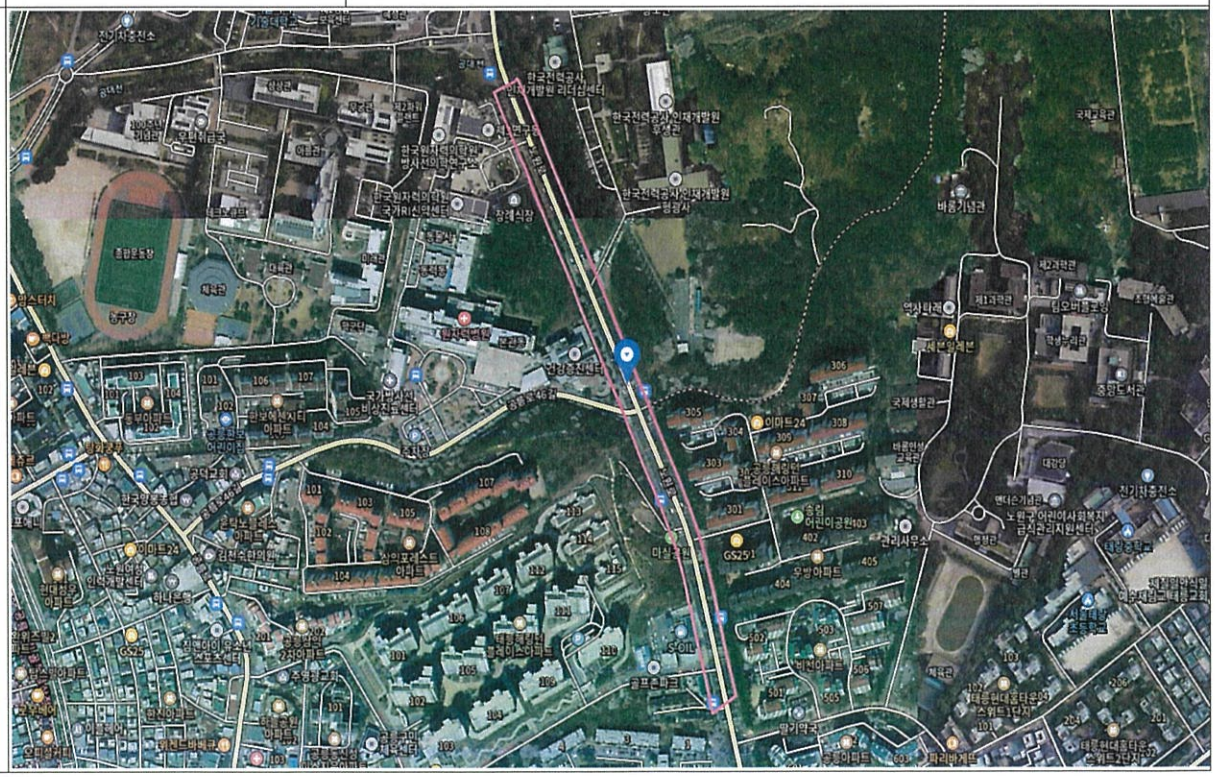	

3. 행정예고 기간 : 2026. 11. 24.~12. 15.

4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 : 2026. 12. 15.
나.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팩스
  1) 우편: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451, 6층 푸른도시과
  2) 팩스: 02-2116-4636
다. 제출서식 : 별지 서식
라. 문 의 처 : 노원구청 푸른도시과 자연생태팀(☏02-2116-3953)
마.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. 끝.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의견제출인</td><td colspan="2">성명</td></tr>
<tr><td>주소</td><td>전화번호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의견제출
내용</td><td colspan="2">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당사자</td><td>성명(명칭)</td></tr>
<tr><td>주소 :

전화번호 :</td></tr>
<tr><td>의 견</td><td></td></tr>
<tr><td>기 타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

유 의 사 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